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,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문화(안 제8조제1항제2의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교육경력의 범위) ①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3항, 별표 1 및 별표 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3항,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“교육경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 1. ~ 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(교육경력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<u>2의3.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</u>
3.·4. (생략) ②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8